

의안번호	제 10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사유

- 현재 우리 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안전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전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조(「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3조(「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조(「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8조제4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 ① ~ ④ (생략)</p> <p><u>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5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 위원회) ① ~ ③ (생략) <u>&lt;신설&gt;</u>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 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 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 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 동으로 해산한다.</u>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p> <p>3.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p>	<p>제1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lt;삭제&gt;</p>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p> <p><u>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u></p> <p><u>&lt;신설&gt;</u></p> <p><u>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1. ~ 5. (생략)</p>	<p>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u>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p><u>④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략)</p> <p><u>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 <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p>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생략)</p> <p>② <u>도지사는 위촉된 위원</u>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u></p>	<p>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의 설치와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u>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회의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u></p> <p>⑥ <u>실무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u></p> <p>⑦ (생략)</p>	<p>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회의의 설치와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협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p>⑤ (현행 제7항과 같음)</p>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안전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홍순덕